

## 1. 誘導燈의 設置 및 管理 運用 指針

'84년 6월 30일 改正된 消防法 施行令 第17條, 18條, 19條, 21條 中 避難口誘導燈 施設을 既存 建物에 適用함에 있어 建物構造上 設置에 어려움이 있으며 照度を 制限할 必要性이 있는 建物이 있으므로 '85년 4월 內務部에서 “誘導燈의 設置 및 管理 運用 指針”을 마련, 施行하고 있다.

### 1. 避難口誘導燈 設置 基準 適用의 合理化

大型 또는 中型 避難口誘導燈의 設置는 消防對象物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與件에 適合하도록 特別規定(施行令 第24條 및 基準規則 第144條)을 合理的으로 運用, 設置管理토록 할 것.

#### 가. 建物構造上 설치 곤란한 경우 등

大型 또는 中型 避難口 誘導燈을 設置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이 建物 構造上 出入口의 上端이 낮거나 幅이 좁아 設置가 困難한 位置와 設置對象의 用途라도 그 規模가 적어서 大型 또는 中型 誘導燈의 設置가 過多하다고 判斷되는 對象은 與件에 適合한 誘導燈을 設置하도록 措置.

#### 나. 公演場의 경우

公演場은 그 特殊性으로 보아 室內의 照度を 制限하여야만 할 必要性이 있으므로,

① 室內 客席에 面하여져 있는 部分(映画, 演劇 등을 直接上映, 公演하는 場所)의 出入口에 小型 避難口 誘導燈을 設置하였을 때에는 이를 認定하고,

② 로비 및 休憩室 등 室內客席과 直接 面하여져 있지 아니한 部分에 대하여는 반드시 大型 避難口 誘導燈을 設置토록 하되,

③ 小劇場(天井이 높은 곳은 除外)을 包含하여 大型 避難口 誘導燈 設置가 困難한 構造인 建築物에 대하여는 中型 또는 小型 避難口 誘導燈을 設置토록 할 것.

### 2. 3線式 配線方法의 施工 指導

新築建築物은 물론 既存,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別添”된 3線式 配線方式(基準規則 第108條 第3項 第2號 參照)에 의하여 誘導燈을 施工할 수 있음을 指導하되 同方法에 의하여 施工된 消防對象物로서 아래 條件에 合當한 境遇에는 다음의 措置를 할 수 있음.

#### 가. 點滅器(消燈스위치) 設置

防火管理 體制가 確立되어 있는 對象(安全擔當部署 職員, 請願消防員, 警備員, 宿直者 등이 常住하는 場所)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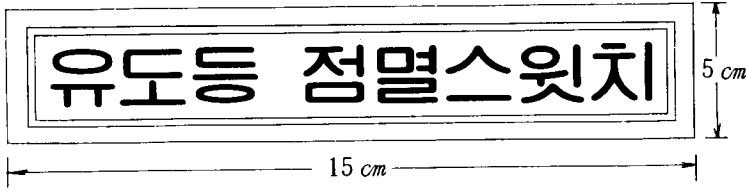
① 休日이나 夜間에 通常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

② 警備員 또는 宿直者 등에 의하여 管理가 되고 사람이 없는 곳.

## 나. 方 法

① 點滅者는 防災室이나 守衛室 등 1個所에서 一括的으로 操作할 수 있는 方法으로 設置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不得已한 境遇에는 層別로 設置할 것.

② 誘導燈의 點滅器가 設置된 바로 上端에는 아래 規格의 標識를 附着케 할 것.



○ 바탕은 적색    ○ 글자와 선은 황색

## 다. 消燈 및 點燈時間

① 消防對象物에 警備員이나 宿直者를 除外하고는 사람이 없게 되는 時間(期間).

② 外光에 의하여 避難口 또는 避難條件을 滿足시키는 時間에 한하여 消燈을 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③ 사람이 있을 때에는 點燈토록 할 것.

## 라. 消燈할 수 있는 場所 選定

① 3線式 配線方法으로 施設을 完了하고 위의 各條件에 滿足하여 消燈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消防署長과 事前 協議토록 關係者에게 通報하되,

② 消防署長은 同建築物의 狀況을 合理的으로 判斷, 消燈을 할 수 있는 場所를 區分 指定해 줄 것.

## 3. 行政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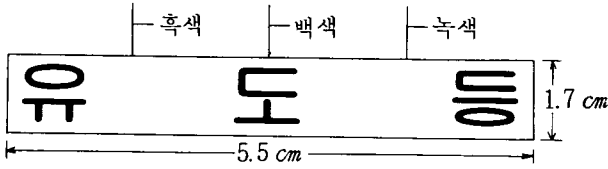
가. 市·道知事는 本指示事項에 대한 效率的인 運用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地域實情에 맞도록 細部指針을 作成施行할 것.

나.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消防對象物의 關係者가 誘導燈을 設置하거나 또는 規格이 다른 것으로 交替하고자 하는 때에는 配線의 굵기와 許容電流 등을 充實히 檢討한 後 施設토록 할 것.

다.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은 大型 또는 中型 避難口 誘導燈으로 設置하거나 交替하여야 할 消防對象物에 대하여는 本指針 內容을 早速히 通報하여 이로 인한 問議나 不便을 解消토록 할 것이며, 點滅器를 設置 運用하게 되는 消防對象物에 대하여는 消燈하였더라도 有事時에는 即時 誘導燈을 點燈토록 指導할 것.

【別添】

1. 3선식으로 배선할 수 있도록 보급되고 있음.



2. 선별 활용도

- 흑색선 - 충전선
- 백색선 - 공통선
- 녹색선 - 스위치 조작선

◆ 배선방식 ◆

1. 유도등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함(기준규칙 제 10 조 제 1 항).

2. 배선 방식

- 스위치 1 : 분전반 스위치임(평상시에는 정등된 상태 위치).
- 스위치 2 : 접멸 스위치임.

3. 제 2의 배선방식에 의거 설치되었을 때의 기능

가. 교류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경우

- 스위치 2를 소등(OFF)된 상태에 두면,
  - 충전선을 통하여 유도등 내에 내장된 예비전원이 계속 충전되는 상태로 있게 되고,
  - 교류전원의 공급으로부터 유도등은 꺼진다.
- 스위치 2를 점등(ON)된 상태에 두면,
  - 교류전원의 공급에 의거 유도등이 점등되며,
  - 예비전원에 충전도 계속된다.

나. 교류전원의 차단 또는 공급되지 않을 경우

- 스위치 2에 관계없이 예비전원에 의하여 자동 점등된다. \*

